

2021년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화) 사업자 제2차 신규·갱신 인증 신청 안내

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·시행('15.6.4.)에 따라 2021년 신규·갱신 인증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. 6. 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

- 신청기간 : 6.1.(화)~10.8.(금) (*일정 변동 될 수 있음,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·현장실사 실시)
- 신청대상 : 1) 신규 - 20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
2) 사업변경 - 인증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*된 인증기업
*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: 1차 농산물 변경 시, 신규인증 신청
3) 갱신 - ①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'21.9.11 만료되는 경영체(13개소)
②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'21.10.5 만료되는 경영체(2개소)
③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'21.12.4 만료되는 경영체(22개소)
④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이 '21.12.10 만료되는 경영체(3개소)

□ 신청 대상에 따른 추진일정

대상구분	인증만료일	해당 인증사업자 수	소규모그룹컨설팅	공고 마감일	현장실사
신규	-	-	6~8월	21.8.13.(금)	8~9월
사업변경	-	-	수시	수시	수시
갱신	21.9.11	13	6~7월	21.7.9.(금)	7월 중
	21.10.5	2			
	21.12.4	22	6~10월	21.10.8.(금)	10월 중
	21.12.10	3			

*인증설명회는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설명회로 개최할 예정

*소규모그룹컨설팅 사업계획서 컨설팅시, 사전에 경영체가 사업계획서 초안작성 완료 해야함

*소규모그룹컨설팅은 신청 경영체 사업장 방문 1:1로 이뤄질 예정

*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
□ 인증 신청서류 (www.제주6차산업.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)

- ▶ 인증·갱신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(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)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의 경우), 사업자 등록증,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일자리 증빙서류, 지역농산물 증빙서류 등

□ 인증신청 접수 및 마감기한 :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

- 접수방법 : 직접 제출(제주시 첨단로 213-65, 2층) 또는 우편접수(공고마감일 18:00 도착에 한함)

□ 인증자격요건

구분	세부내용
대상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상주체 여부 -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·인 창조기업 등
사업장 입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촌지역 입지여부 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
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(품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촌융복합형태 여부(1차×2차), (1차×3차), (1차×2차×3차) ■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- 사업계획서(서식)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,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(예 : 사과(사과즙, 사과젤리 등)) *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■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,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,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·군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- 가공품의 주원료는 주로 자가생산·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되,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
사업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40백만원' 달성 및 증빙 -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40백만원(산출 근거: '18년 38,239, '19년 42,066) * 코로나19로 '20년도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전 최근 2개년 실적으로 대체 가능 -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-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, 주사업장 및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,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- (일자리) 4대보험 신고서류, 일용직 신고서,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- (지역농산물) 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,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

□ 문의처 :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김승주 팀장

전화 : 064-722-7917 / e메일 : stormand@jeju6th.kr / Fax 064-722-7919